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085
----------	-------

발의연월일 : 2026. 9. 3.

발 의 자 : 김용태 · 서천호 · 김성원
조정훈 · 조은희 · 이종배
박충권 · 김승수 · 고동진
김재섭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산림재난방지기관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산사태 발생 위험성이 높은 지역 중 생활권과 인접한 지역 등을 대상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해 관리하고 있음.

그런데 산림재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체계 이행력과 실효성 강화를 위해서는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와 안전조치 이행여부를 관리·감독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또한, 현행법의 ‘산사태취약지역’이란 용어는 발생 위험성 자체보다는 피해 민감성 및 관리 필요성을 반영한 개념인데, ‘취약지역’의 용어 특성 상 산사태 발생 위험이 매우 높아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으로

오인되고 있음.

실제로 2025년 산사태 피해지 2,637개소 중 산사태취약지역 내에서 발생한 것은 244개소로 약 9%에 불과함.

이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기능과 역할을 고려하여 산림 재난방지 시행계획 수립체계를 정비하고, 현행 ‘산사태취약지역’의 용어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변경함으로써,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제도가 인명·재산 피해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관리제도임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2조 등).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재난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 지역”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광역시장”을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으로 한다.

이 경우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제2항 중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를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과 지역계획에”로, “지역시행계획”을 각각 “광역시행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3항) 중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 계획”을 “시행계획, 광역시행계획 및 기초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4항) 전단 중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를 “시행계획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중 “제4항까지에”를 “제6항까지에”로, “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를 “시행계획등의”로 한다.

③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광역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림재난방지 기초시행계획(이하 “기초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19조제1항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기간 동안 시행계획의”를 “시행계획의”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우려지역”을 “우려지역(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장”을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에서 같다)”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사태등 예방에”를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사태취약지역의”를 “산사태관리지역의”로 한다.

다만, 산림재난피해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

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의 제목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붕괴·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를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를 “산사태관리지역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사태취약지역을”을 “산사태관리지역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의”를 “산사태관리지역의”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같은 조 제6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으로”를 각각 “산사태관리지역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의”를 “산사태관리지역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이”를 “산사태관리지역이”로 하고, 같은 조 제9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을 “산사태관리지역을”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 중 “산사태등”을 “산사태관리지역에서 산사태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에”를 “산사태관리지역에”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항 전단 중 “산사태취약지역의”를 “산사태관리지역의”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를 각각 “산사태관리지역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14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각각 “산사태관리지역”으로, “산사태취약지역의”를 “산사태관리지역의”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산사태취약지역의”를 “산사태관리지역의”로, “산사태

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중 “산사태취약지역에서”를 “산사태관리지역에서”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사태취약지역에서는”을 “산사태관리지역에서는”으로 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에”를 “산사태관리지역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한다.

제26조의 제목 중 “산사태취약지역의”를 “산사태관리지역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산사태취약지역의”를 각각 “산사태관리지역의”로, “산사태취약지역과”를 “산사태관리지역과”로,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한다.

제41조제1항제3호 중 “산사태취약지역의”를 “산사태관리지역의”로 한다.

제51조제2항제1호 중 “산사태취약지역에”를 “산사태관리지역에”로 한다.

제73조제4항제1호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한다.

제77조제1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에서”를 “산사태관리지역에서”로 한다.

법률 제21622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제3항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사태관리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취약지역은 제2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사태관리지역으로 본다.

제3조(지역시행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수립된 지역시행계획은 제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시행계획 및 기초시행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제2호 중 “산사태취약지역”을 “산사태관리지역”으로 한다.

② 사방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본문 중 “산사태취약지역을”을 “산사태관리지역을”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8. (생략)	1. ~ 8. (현행과 같음)
9. “ <u>산사태취약지역</u> ”이란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으로 제22조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9. - <u>산사태관리지역</u> ----- ----- ----- ----- ----- -----.
가. ~ 다. (생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0. ~ 14. (생략)	10. ~ 14. (현행과 같음)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제7조(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 등)
① 산림청장은 체계적인 산림재난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림재난방지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① ----- ----- ----- ----- ----- -----.
	이 경우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에 부합하도록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②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지방산림청장,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무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⑧ (생략)

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① (생략)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매년 산림재난방지 지역시행계획(이하 “지역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② -----

-----통합특별시장·광역시장-----

-----.

③ ~ ⑧ (현행과 같음)

제8조(산림재난방지 시행계획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시행계획과 지역계획에--

-----광역시행계획-----
광역시행계획-----
-----.

③ 시·도지사 및 지방산림청장은 광역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 및 국유림관리소장은 광역시행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③ <u>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u>은 산림재난별로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 또는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에게 <u>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u>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산림재난방지유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u>시행계획 및 지역시행계획의</u> 수립·변경과 자료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산림청장은 「<u>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u>」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정하는 여름철 재해대책	<u>고려하여 매년 산림재난방지 기초시행계획(이하 “기초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u> ⑤ <u>시행계획, 광역시행계획 및 기초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등”이라 한다)</u>-----. ⑥ ----- ----- -----<u>시행계획등</u> <u>의</u>----- ----- -----. ⑦ -----<u>제6항까지에</u>--- ---<u>시행계획등의</u>----- ----- ----- -----. 제19조(산사태예방지원본부 설치·운영) ① -----<u>시행계획의</u>----- ----- -----
--	---

기간 동안 시행계획의 체계적 추진과 산사태등 발생 위험 정보의 수집·전파, 신속한 대응 및 상황관리 등을 위하여 산림청장 소속으로 산사태예방지원 본부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제21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① 산림청장은 산림재난 위험도평가 결과 등에 따라 5년마다 산사태등의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②·③ (현행과 같음)

제21조(산사태등 발생 우려지역 조사) ① -----

-----우려지역(제9조제2항에 따른 산림재난 위험지도의 위험등급을 고려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②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22조, 제23조 및 제25조에서 같다)-----
-----. 다만, 산림재난 피해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를 실태조

③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사태등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조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 한정한다.

1.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변경·고시 및 해제

2. ~ 4. (생략)

④ (생략)

제22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국유림의 경우 지방산림청장을 말하며, 공유림·사유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3조에서 같다)은 제21조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붕괴·침식·균열 등으로 산사태등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사로 같음할 수 있다.

③ -----

-----산사태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 중-----.

<단서 삭제>

1. -----산사태관리지역의-----

2. ~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산사태관리지역 지정 및 해제 등) ① -----

-----산사태등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하려면 지정예정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1. ~ 4. (생략)

③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과 관련하여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2항제3호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생략)

⑤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없거나 이의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 및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

-----산사태관리지역으로-----
-----.

② -----
-----산사태관리지역
을-----

-----.

1. ~ 4. (현행과 같음)

③ -----산사태관리지역
의-----

-----.

④ (현행과 같음)

⑤ -----

-----산사태관리지역으로-----

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주소·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기관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30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한다.

⑥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지의 이용이나 사방시설의 설치 등으로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한 범위를 변경하여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다.

⑦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변경은 고시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⑧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6항에 따라 지정·변경된 산사태취약지역이 사방댐 설치사업 등 「사방사업법」 제3조에 따른 사방사업의 시행 등으로 인하여 그 지정 목적이 달성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해제할 수 있다.

-----.

-----.

⑥ -----

-----산사태관리지역으로-----

-----.

⑦ 산사태관리지역의-----

-----.

⑧ -----

-----산사태관리지역이-----

-----.

⑨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1항·제5항·제6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산사태취약지역을 지정·변경하거나 해제한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를 거쳐 (공유림·사유림의 경우에 한정한다) 산림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⑩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등 발생 시 지역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곳에 대피소를 지정하고 이를 표시하는 표지판(이하 “대피소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⑪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위험 및 대피소 위치를 안내하는 표지판(이하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상태를 연 2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⑫ 누구든지 대피소 표지판 또는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을 설치한 자의 허락 없이 이를 이전하거나 훼손하여서는 아니

⑨ -----

-----산사태관리지역을

-----.

⑩ -----
산사태관리지역에서 산사태등

-----.

⑪ -----
산사태관리지역에-----

-----산사태관리지역-----

-----.

⑫ -----
---산사태관리지역-----

된다.

⑬ 산림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이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하지 아니한 해당 지역을 산사태취약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⑭ 그 밖에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예정지 공고,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고시·변경 및 해제, 대피소 지정, 대피소 표지판 및 산사태취약지역 표지판의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22조에 따른 산사태취약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 소속으로 산사태취약지역 지정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

다.

⑬ -----
-----산사태관리지
역의-----

산사태관리지역으로-----
-----산사태관
리지역으로-----

.

다.

⑭ -----산사태관리지역--
-----산사태관리지역
의-----

산사태관리지역-----

-----.

제23조(산사태관리지역 지정위원회) -----
-----산사태관리지역
의-----

-----산사태관리지역-----

다. 이 경우 지방산림청장 소속
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특별
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
장·군수·구청장 소속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24조(산사태취약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누구든지 산사태취약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생략)

제25조(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
소 관리 등) ① 산림재난방지
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에
「사방사업법」 제5조 및 제6
조에 따른 사방사업을 다른 지
역에 우선하여 시행하여야 한
다.

②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및 대피소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현지점검
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 ⑤ (생략)

제26조(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① 산림재난방
지기관의 장은 산사태취약지역
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

---. -----

-----.

제24조(산사태관리지역에서 행위
제한 등) -----산사태관리
지역에서는-----
-----.

1.·2. (현행과 같음)

제25조(산사태관리지역 및 대피
소 관리 등) ① -----
-----산사태관리지역에

-----.

② -----
산사태관리지역-----

-----.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6조(산사태관리지역의 토지
등 매수·교환) ① -----
-----산사태관리지역
의-----

여 필요하면 토지소유자와 협의하거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산사태취약지역의 토지(산지의 입목·죽을 포함한다)나 산사태취약지역과 연결한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취약지역 인근의 토지를 예산의 범위에서 매수하거나 국유림 또는 공유림과 교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교환의 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된 가격으로 한다.

② (생략)

제41조(산사태대응팀 등 구성·운영) ① 산림청장 및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은 제56조에 따른 산림재난방지 교육을 이수한 공무원(「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원산림보호직원을 포함한다)으로 조직된 산사태대응팀을 구성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1. 2. (생략)

-----산사태관리지역-----

-----산사태관리지역과-----

산사태관리지역-----

-----.

② (현행과 같음)

제41조(산사태대응팀 등 구성·운영) ① -----

-----.

1. 2. (현행과 같음)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5조에 따른 <u>산사태취약지</u> <u>역</u> 현지점검 2. ~ 5. (생략) 제77조(벌칙) ① 제24조를 위반하 여 <u>산사태취약지역</u>에서 사방시 설을 훼손하거나 사방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것을 거부 또 는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 금에 처한다. ② (생략) 법률 제21622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과태료) ①·② (생략) ③ 제22조제12항을 위반하여 대피소 표지판 또는 <u>산사태취</u> <u>약지역</u> 표지판을 이전하거나 훼손한 사람에게는 200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 ⑥ (생략)	----- ----- -----. 1. -----<u>산사태관리지</u> <u>역</u>----- 2. ~ 5. (현행과 같음) 제77조(벌칙) ① ----- ---<u>산사태관리지역</u>에서----- ----- ----- ----- -----. ②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622호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 제79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u>산사태관</u> <u>리지역</u>----- ----- -----. ④ ~ ⑥ (현행과 같음)
--	--